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3가단2674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한별

담당변호사 임호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

담당변호사 김범선, 강수연

변 론 종 결 2024. 11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의 지분에 대한 2021. 11. 20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의 지분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로

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. 5. 20.접수 제17182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10.경 원고의 아들 친구인 C에게 1억 5,000만 원을 빌려주면서, 2013. 10. 10.
채무자 C, 대여금 150,000,000원, 변제기 2015. 3. 30. 100,000,000원, 2015. 6. 30.
50,000,000원, 이자 연 12%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인 C의 부친인 D(이하
'망인'이라고 한다)은 2021. 11. 20.경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, E가
있었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은 2021. 11. 2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. 5. 20.
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
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(1) 원고

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
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
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
C에게 2/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

D은 2015. 7. 10.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, 형식상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을 제1호증의 기재, 증인 C의 증언,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은 사망 전인 2015. 7. 10.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(이하 ‘이 사건 유증’이라고 한다)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, 작성연월일과 주소,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(위 유증이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),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다른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그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는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지희

별지